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 정 2019. 1. 29.  
전부개정 2022. 2. 3.(1차)  
일부개정 2022. 7. 27.(2차)  
일부개정 2023. 3. 16.(3차)  
일부개정 2024. 2. 21.(4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47조 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운영지침은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의 신청사업장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하며 운영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절감실적 등의 산정·보고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IPMVP, ISO 17741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④ 이 지침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사업 및 제3호에 따른 특화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2024.2.21.>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산출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사업추진 방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일반사업”이란 효율향상설비개체 지원 및 계측전송장치를 부착하여 개체 전후 설비의 전력량 등 측정을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기록관리 하여 에너지절감성과를 산정하고 필요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2.21.>

3. “특화사업”이란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정보교류활동 지원 및 효율향상설비개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2.21.>
4. “주관기관”이란 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신청사업장”이란 조성사업에 신청한 사업장을 말한다.
6. “지원사업장”이란 조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 등에 효율향상설비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참여전문기업”이란 제6호의 지원사업장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사전진단, 에너지절감량 산정방법에 대한 컨설팅, 데이터 수집·관리 지원, 효율향상설비 개체지원, 베이스라인 설정, 절감량 산정지원 등 사업전반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2.21.>
8.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란 제6호의 지원사업장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계측전송장치 설치, 점검 등 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4.2.21.>
9.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란 제6호의 지원사업장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향상설비 설치 등 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4.2.21.>
10. “보조금”이란 지원사업장이 설비 등에 계측전송장치 구축 및 베이스라인 에너지사용량 설정, 효율향상설비 개체 등을 수행할 경우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11. “총사업비”란 사업장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비 등에 계측전송장치 구축 및 베이스라인 에너지사용량 설정, 효율향상설비 개체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설비설치비”란 신청사업장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건축물 등에 효율향상설비를 개체하는데 소요되는 설비비 및 시공비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13. “설비비”란 신청사업장이 조성사업의 효율향상설비를 개체하는데 소요되는 순수한 기기비용을 말하며 시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4. “시공비”란 기기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설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수행책임자”란 조성사업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사업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2.21.>
16. “수요조사”란 조성사업의 신청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효율향상설비·시스템 관련기술을 사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성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회부<개정 2024.2.21.>
  3.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환수
  4. 조성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결과보고 및 성과활용촉진 등 사업관리
  5. 조성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기타 조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주관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연도 조성사업 전체 예산의 일부를 사업 수요조사, 심의위원회의 운영, 기타 조성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24.2.21.>

**제5조(지원사업장 등)** ① 지원사업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
  2. 본 지침에 따른 각종 조사, 자료제출 등의 성실한 이행
  3. 관계법령 및 본 지침의 준수
  4. 조성사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수행
  5. 설비 및 계측전송장치가 정상작동이 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수행
- ② 지원사업장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여전문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계측전송장치의 유지를 위한 통신비는 지원사업장이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지원사업장 및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수행책임자)** ① 지원사업장 및 참여전문기업은 당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참여 인력 중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 ② 지원사업장의 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제출
  2. 사업 수행 전반 및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
  3. 주요현안 관리사항 주관기관 통보 <개정 2024.2.21.>
  4.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진도·결과보고 <개정 2024.2.21.>
  5. 사업 성과관리 및 사후활용
- ③ 참여전문기업의 수행책임자는 지원사업장이 제6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4.2.21.>

- ④ 수행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지원사업장은 즉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항에서 이기 2024.2.21.>

**제7조(심의위원회)**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
  2. 조성사업 지원사업장 선정 및 정부지원금 규모 적정성에 관한 평가
  3. 조성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평가
  4. 조성사업 수요조사에 관한 평가
  5. 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심의
  6. 지원사업장 및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기업,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의 의무 또는 이행사항의 제재조치,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에 관한 심의
  7. 지원설비의 처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심의
  8. 기타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심의
- ② 위원회 위원은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및 내부전문가 총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주관기관은 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조성사업의 신청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당해 사업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기관의 사업관리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 ⑥ 위원은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 상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2.21.>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제8조(조성사업의 지원범위)** ①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측정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
2. 지역에너지효율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컨소시엄 내 전력효율향상 목표수립 및 이

행활동,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역량강화 및 지역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3. 기타 주관기관이 지역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 제고, 에너지효율자원 발굴 및 시장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보조금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측전송장치 구축, 베이스라인설정 및 절감량산정지원, 효율향상설비 개체 등에 따른 제반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한다.

② 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예산규모와 지원한도금액은 사업구분,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장에 지급 가능한 보조금은 당해 연도 사업공고에 따르며, 동일법인 내 사업장들이 지원받는 보조금 총합계는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효율향상설비 개체, 계측전송장치 구축 및 베이스라인 설정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용은 당해 연도 사업공고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개정 2024.2.21.>

③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 설비·시스템은 당해 연도 사업공고에 따른다. 다만,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 설비·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지원대상 설비·시스템은 매년 자체설비조사 및 제11조의 수요조사 절차를 통해 변경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⑥ 지원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가동 되지 않는 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대체하거나, 평소에 사용하는 상용설비의 대신 또는 보조로 사용되는 예비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2.21.>

**제11조(수요조사)** ① 주관기관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신규효율향상설비·시스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신규효율향상설비·시스템을 공모결과 우수한 제안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사업관리

#### 제1절 사업공모 및 지원사업장 선정

**제12조(사업공고)** ①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성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1. 지원사업의 구분 및 사업개요
2. 지원설비·시스템 및 지원범위
3. 신청자격
4.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5. 사후관리방법 및 유의사항
6.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기관은 일반사업 및 특화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신청사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설치소재지, 대상설비, 설치 대수,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보완 및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사업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신청사업장은 신청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기기 및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공인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는 기관(기업 포함)의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이거나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2. 휴·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4.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6.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7.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신청설비가 유사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중이거나 지원을 받을 예정인 경우
  9. 제34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조치를 받아 제제기간 중인 사업장인 경우
  10. 기타 조성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회 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2.21.〉

**제15조(사업계획서 평가)** ① 주관기관은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12조 제1항제4호의 당해 연도 사업공고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에너지절감효과, 정부보조금 지원비용 등 계량지표와 사업 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량 산정 계획의 타당성 등 비계량지표로 구성한다.
- ③ 주관기관은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이행 및 적정 지원사업장의 선정을 위해 사업 계획서 평가시 당해연도 사업공고에 따른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2.21.〉
- ④ 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 및 기간 을 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⑤ 주관기관은 적절한 보조금 교부 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사업 장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선정결과의 통보 및 보고)** 〈삭제〉

**제17조(선정결과의 통보)** ① 주관기관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당 해 연도 선정기준 및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장을 선정한다.

-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평가 후 선정된 지원사업장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 다.

**제18조(선정의 취소)**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사업

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 조작한 경우
2.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사업장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한 사 실이 발각된 경우
3. 신청사업이 자금용자 등 정부예산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설비일 경우
4.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제5항에서 이기 2024.2.21.〉
5. 기타 조성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6항에서 이기 2024.2.21.〉
6. 삭제 〈2024.2.21.〉

## 제2절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제19조(협약기간)** ① 조성사업의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다음년도의 말일까지 체 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기·시스템의 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일정기 간 동안 협약사항을 유지할 수 있다.

- ② 조성사업의 추진 상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관 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장과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체결)** ① 지원사업장은 제17조제2항에 의해 선정평가결과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사업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조성사업 협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 다.〈개정 2024.2.21.〉

- ② 지원사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결 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장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장이 불응할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범위 축소 등 협약내용을 변경하 거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2.21.〉

-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선정이 취 소된 경우 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 신청사업장과 잔여예산범위 내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2.21.>

**제21조(계획 변경 등의 승인)** ① 지원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2.21.>

1. 지원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2.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3. 사업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4. 기타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개정 2024.2.21.>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원사업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③ 주관기관은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신청서를 지원사업장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④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지원설비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의 보고)** ① 지원사업장은 협약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지원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 보고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2.21.>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제23조에 따른 협약해약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2.21.>

**제23조(협약의 해약)**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사업장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4. 지원사업장이 부도 또는 폐지 등으로 당해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어려운 경우
5.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선정 취소사유가 밝혀지는 경우<개정 2024.2.21.>

6. 특별한 사유 없이 효율향상설비 설치가 당해 연도 공지한 완료일까지 설치되지 않은 경우

7.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진도·결과보고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개정 2024.2.21.>

8.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신설 2024.2.21.>

9. 기타 당해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집행중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하여야 하며, 제34조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2.21.>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보조금은 지원사업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구축된 설비 및 시스템의 확인 이후 확인된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사업장은 기존설비에 계측전송장치를 구축한 후 설치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4호의1서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③ 지원사업장은 효율향상설비 및 시스템에 계측전송장치를 구축한 후 설치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2.21.>

④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장의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장확인을 수행하며, 현장확인업무 수행은 주관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하여 지정된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⑤ 지원사업장은 현장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한다.<개정 2024.2.21.>

⑥ 주관기관의 장은 제5항의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를 보완 및 추가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⑦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의 현장확인 결과 및 제5항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받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이 지원사업장과 협의를 거친 후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2.21.>

## 제4장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제25조(사업의 진도·결과보고)** ① 지원사업장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현장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종료연도의 12월까지 월 1회 별지 제14호의1서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당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대 14일 범위 이내로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③ 지원사업장은 제20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에너지절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종료연도의 10월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제26조(사업결과 현장실태조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진도·결과보고의 확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② 지원사업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현황 : 계획대비 달성 여부 및 사업의 활용실적 등 사업 수행내용
2. 사업성과 : 기기·시스템, 서비스, 기반구축 등 사업의 연계효과 및 기타 성과

**제27조(설치설비의 관리)** ① 지원사업장은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장은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2.21.>

③ 삭제 <2024.2.21.>

④ 삭제 <2024.2.21.>

**제28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① 지원사업장은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산처리 승인신청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2.21.>

② 주관기관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인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지원사업장에 통보한다.<개정 2024.2.21.>

③ 지원사업장이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

기처분 할 경우 주관기관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장이 설비설치완료 후 5년 이내에 설비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가액의 일부를 주관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처분설비에 대한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최종가액으로 산정한다.

2. 산정된 최종가액에서 협약서 상 지원받은 보조금 지원비율만큼의 금액을 반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신설 2024.2.21.>

**제29조(소유권 이전)** ① 지원사업장이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사업장을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설비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설비가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설비를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성과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사업장은 조성사업 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장은 협약종료 후 2년간 주관기관 요청 시에는 구축된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성과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③ 지원사업장은 사업결과와 관련하여 효과분석 또는 경제성 분석 등을 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종합분석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21.>

**제31조(사업 결과물의 소유)** ① 당해 조성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및 무형적 결과물은 지원사업장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 지원사업장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 지원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 지원사업장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사업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

만,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개정 2024.2.21.>

1.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조성사업이 취소된 경우<개정 2024.2.21.>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4.2.21.>
  5. 제28조에 따른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7.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진도·결과보고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8. 기타 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주관기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 환수조치)**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8조제5항에 따른 반납요구 또는 제32조에 따른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한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은행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 추심을 시행한 결과,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수금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조금 환수·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법」, 「보조금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다.

## 제5장 보칙

**제34조(제제사항)** ① 주관기관은 신청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는 조성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신청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가 별지 제3호서식의 컨소시엄 참여구성별 역할수행 소홀로 인하여 제21조에

다른 사업계획변경 등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경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2.21.>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4.2.21.>

[제목개정 2024.2.21.]

**제35조(처분통보)** ① 주관기관은 제32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제34조에 따른 제재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처분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②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별지 제16호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4.2.21.>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2.21.>

② 주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③ 지원사업장, 참여전문기업,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 컨설팅업체 등이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7호서식을 이용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2.21.>

##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2022년 조성사업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화사업)** 조성사업의 특화사업의 지원사업장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표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년도 사업공고문의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22.7.27.>

이 지침은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16.>

이 지침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21.>

이 지침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 시 제재사항 <개정 2024.2.21.>

1. 제재대상자

-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지원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로서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 사업계획서, 신청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승인 절차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예 :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서의 설비모델과 상이한 모델이 시공되었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 신청사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지원설비를 사업계획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5년 이하
· 지침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진도·결과보고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대금지급 문제 등으로 공단과 소송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신청사업장, 참여전문기업, 계측전송장치설치업체, 설비설비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체를 말함)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 기타 국가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이하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1의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첨부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사업의 수행)**

(협약사업장)은 수행 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첨부1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급)**

(공단)은 (협약사업장)에게 선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사업 운영지침 제24조에 따른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변경 또는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 ① (협약사업장)은 사업의 진도·결과보고서를 운영지침 제25조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약사업장)은 (공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행책임자가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협약사업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공단)과 (협약사업장)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운영지침 사항을 준용하여 첨부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 ① (공단)과 (협약사업장)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사업장이 조성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4. 지원사업장이 부도 또는 폐지 등으로 당해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어려운 경우
  5. 운영지침 제18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선정 취소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6.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효율향상설비 설치에 당해 연도 공지한 완료일까지 설치되지 않은 경우
  8. 제25조에 따른 사업의 진도·결과보고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9.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10. 기타 당해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운영지침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공단)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보조금 집행증지 또는 운영지침 제32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하고, 제34조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동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조성된 전력기반기금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국가재정법[별표2] 제46호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며, (공단)은 기반조성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정부를 대행하여 보조금법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 ① (협약사업장)은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성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기업 등에게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과의 활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사업성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사업장)에게 사업성과의 공개 또는 제3자 제공 등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 ① (협약사업장) 및 사업 참여전문기업 대표자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만일 (협약사업장)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은 (협약사업장)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운영지침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 ① (협약사업장)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동 사업의 운영지침과 당해연도 사업공고는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1조(해석)**

-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협약사업장)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석에 의한다.
-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사업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사후관리)**

해당시설에 대하여 (협약사업장)은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한 (협약사업장)에게는 조성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설비의 용도)**

해당시설은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자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 ① (협약사업장)은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산처리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공단)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지원사업장에 통보한다.
- ③ (협약사업장)이 (공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④ (협약사업장)이 설비설치완료 후 5년 이내에 설비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가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반납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1. 처분설비에 대한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최종가액으로 산정한다.
  2. 산정된 최종가액에서 협약서 상 지원받은 보조금 지원비율만큼의 금액을 반납한다.

- 첨 부 :**
- 1. 사업계획서 1부
  - 2.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수록)

- 3. 사업장 인감증명서 1부
- 4. 이행지급보증보험(정부보조금) 증권 1부

년 월 일

(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협약사업장): 지원사업장 000 대표 (직인)

참여전문기업 000 대표 (직인)

계측전송장치 설치업체 000 대표 (직인)

효율향상설비 설치업체 000 대표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자체점검 결과보고서(효율향상설비 및 계측전송장치)  
<개정 2024.2.2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효율향상설비 및 계측전송장치 점검)						
사업신청번호		사업자번호				
지원사업장		수행책임자				(서명)
참여전문기업		수행책임자				(서명)
효율향상설비 현황 점검결과						
순번	설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량 (kW)	연동설비1	연동설비2
1	기존설비명 (공기압축기)	KEA	VSD75	75	전력량계 순번1	RTU 순번1
2	삼상유도전동기	KEA	Abc	7.5	전력량계 순번2	RTU 순번1
계측전송장치 점검결과						
순번	설비 구분	제조사	모델명	규격	연동설비1	연동설비2
1	전력량계	aaa	aaa	3상4선	공기압축기 순번1	RTU 순번1
2	전력량계	bbb	bbb	3상3선	삼상유도전동기 순번1	RTU 순번1
3	RTU	bbb	bbb	SKT RoLa	공기압축기 순번1 삼상유도전동기 순번1	전력량계 순번 1 전력량계 순번 2
점검결과	○ 점검결과 이상 없음 ○ 기타사항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세부내용 기재					
위와 같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기존설비 확인 및 계측전송장치 점검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장 대표 (인) <b>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b>						
첨부: 1. 현장설치 사진 2. 계측전송장치 설비규격서(카달로그, 제원표 등)						

[첨부] 현장설치 사진

1. 효율향상설비 현장사진

★ 설비별 전경사진, 명판사진(모델명, 제조사, 제조번호, S/N 등 정보식별가능한 화질  
의 사진첨부해야 함)

설비명	전경사진	명판사진
공기압축기 #1		
전동기 #2		

2. 계측전송장치 현장사진

설비명	전경사진	명판사진
전력량계#1 (공기압축기 #1)		
전력량계#2 (전동기#2)		
RTU#1 (공기압축기)		
RTU#1 (전동기)		



[첨부1] 변경세부 내용

변경 상세내용

변경 사유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첨부2] 변경에 관련된 증빙서류

변경 항목	증빙서류
지원업체 정보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총 사업비 정부보조금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 등
지원설비 변경	○ 변경설비의 사양, 모델명, 가격 확인 가능한 서류 * 관련인증서, 견적서, 설비카달로그
지원 설비 설치 위치	○ 설비 설치 위치 변경 전 후 도면 등
기타	○ 기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증빙서류 등
공통	○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설비관리용 부착명판 <개정 2024.2.21.>

설비명	공기압축기 (순번 #1)
모델명	
설치완료일	20년 월 일

본 설비는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설비로서, 설비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양도 또는 폐기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이내 설비 처분불가)



○규격 : 가로 8cm × 세로 10cm  
상기 규격을 준수하되, 설비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축소제작 가능 (단, 내용식별이 가능하여야함)

○재질 : 종이 외 알루미늄, 스텐 및 아크릴 등 **훼손 및 부식에 강한 재질** 선택

○부착방법 : 설비설치 완료 후 **수행책임자**가 설비전면 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  
(효율향상설비 및 계측전송장치 각 설비에 맞게 제작 후 부착)

[별지 제13호서식]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개정 2024.2.21.>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사업장 기본정보	지원사업장		사업자번호	
	사무소	주소	(우 : )	
		전화	FAX	
	설치지	주소	(우 : )	
		전화	FAX	
	신청설비	담당자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설치완료일		
		금액	취득금액	처분예정일
		처분금액		
처분사유				
<p>운영지침 제28조(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사업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b></p>				

[별지 제14호의1서식] 모니터링 보고서 <개정 2024.2.21.>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장	지원사업장					
	주소					
	수행책임자					
사업장 운영현황	설비 설치일	20 . . . (년.월.일)				
	보고기간	20 . 0. 00. ~ 20 . 0. 00.				
	교대근무	<input type="checkbox"/> 1교대 <input type="checkbox"/> 2교대 <input type="checkbox"/> 3교대				
	월간 공장 가동일수	주중: ( )일, 주말: ( )일	월간 공장 가동시간	( ) [hr]		
	사업장 월간 전력소비량	( ) [MW]				
전력 데이터 모니터링 결과	설비명	정격용량 [kW]	데이터 수집률 [%]	월간 전력사용량 [kWh]	월평균 소비전력 [kW]	월간 가동시간 [hr]
특이사항 (이상여부 및 조치내용)	설비 운전					
	계측전송장치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설비별 월간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사업장 : (서명 또는 인) <b>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b>						
첨 부: 절감량 산정을 위한 전력사용량 및 관련변수 데이터(엑셀 파일) 1부.						

[별지 제14호의2서식] 에너지절감 실적보고서 <개정 2024.2.21.>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에너지절감 실적보고서						
사업장	지원사업장					
	주소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수행책임자					
설비별 에너지절감 실적	설비명		용량		용도	
	베이스라인 기간		보고기간			
	에너지절감량[kWh]					
	절감량 산정식					
	관련변수 1	변수명		단위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측정 <input type="checkbox"/> 추정	※ 측정기간, 측정간격, 추정방법 등 설명		
		산정값	베이스라인			
	관련변수 2	변수명		단위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측정 <input type="checkbox"/> 추정	※ 측정기간, 측정간격, 추정방법 등 설명		
		산정값	베이스라인			
관련변수 3	변수명		단위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측정 <input type="checkbox"/> 추정	※ 측정기간, 측정간격, 추정방법 등 설명			
	산정값	베이스라인				
※ 지원설비별로 추가 작성						
사업장 에너지절감 실적	일련	설비명	절감량[kWh]			
	1					
	2					
	3					
	합 계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절감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사업장 : (서명 또는 인) <b>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b>						
첨 부: 보고기간 에너지절감 실적 세부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1부.						

[별지 제15호서식] 사고보고서 <개정 2024.2.21.>

사 고 보 고 서				
지 원 사 업 장				
사 무 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p>위와 같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수행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사업장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p>				

[별지 제16호서식] 처분통보서 <개정 2024.2.21.>

처 분 통 보 서			
협약 내용	협약사업장		
	협약기간		
	사업비	총사업비(천원)	보조금(천원)
처분 내용	처분대상		
	처분내역		
	처분사유		
<p>위와 같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p>			

[별지 제17호서식] 이의신청서 &lt;개정 2024.2.21.&gt;

이 의 신 청 서			
지 원 사 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AX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p>운영지침 제36조(이의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p> <p>지원사업장 : (인)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YYYY.MM.DD))            주 소 :            처분 받은 자와의 관계 :</p> <p style="text-align: center;"><b>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b></p>			